

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58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년 12월 6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용자대상의 선정과 대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의하는 것은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대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.(안 제6조제6호, 안 제9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6호를 삭제하고, 제6조제7호를 제6조제6호로 한다.

안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,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9조제 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4. "수행기관"이란 시와 읍 자치약을 체결하고,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 원 등 사회적금융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
제4조(기금의 용도) (생략) 1.~ 5.(생략) <u><신 설></u> 6. (생략)	제4조(기금의 용도) (현행과 같음) 1.~ 5.(현행과 같음) 6.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비융자사업비 지원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	제4조(기금의 용도) (개정안과 같음)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) (생략) 1.~ 3.(생략) <u><신 설></u> 4. (생략)	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) (현행과 같음) 1.~ 3.(현행과 같음) 4. 기금운용현황 보고 5.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. 대손에 관한 사항 7. (현행 제4호와 같음)	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) (개정안과 같음) 1.~ 5.(개정안과 같음) <u><삭 제></u> 6. (개정안 제7호와 같음)
제7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, 당연직 위 원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 장과 예산담당 부서장으 로 한다. ③ ~ ④ (생략)	제7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15명----- ----- ----- ② ----- 위원 중에서 호 선----- -----재정담당 부서장----- ----- ③ ~ ④ (현행과 같음)	제7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(개정안과 같음)
제8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~ ② (생략)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 를 소집할 수 있다. ④ ~ ⑤ (생략) <u><신 설></u> ⑥ ~ ⑨ (생략)	제8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인정 하는 경우와 위원의 1/3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----- ④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반기 1 회 이상 운영하고, 기금운 용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다. ⑦~⑩ (현행과 같음)	제8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(개정안과 같음)

<p><u>제9조(기금의 관리)</u> <u><신 설></u></p> <p>① (생략) ② <u>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 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(생략) ④ <u>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투자·용자 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,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</u> 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9조(기금의 관리)</u> ① <u>기금은 시장이 관리·운용하며,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</p> <p>③ <u>대손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</u> ④ <u>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⑤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</p> <p>⑥ <u>제4조에 따라 투자·용자 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,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제9조(기금의 관리)</u> ①~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③ <u>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⑤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u>제10조(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)</u> (생략)</p>	<p><u><삭 제></u></p>	
<p><u>제11조(결산 및 보고)</u> (생략)</p>	<p><u>제10조(결산 및 보고)</u> (현행과 같음)</p>	<p><u>제10조(결산 및 보고)</u>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u>제12조(존속기한)</u> (생략)</p>	<p><u>제11조(존속기한)</u> (현행과 같음)</p>	<p><u>제11조(존속기한)</u>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u>제13조(시행규칙)</u> (생략)</p>	<p><u>제12조(시행규칙)</u> (현행과 같음)</p>	<p><u>제12조(시행규칙)</u>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"수행기관"이란 시와 용자계약을 체결하고,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등 사회적금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6호를 제7호로 한다.

6.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비융자사업비 지원

제6조제4호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한다.

4. 기금운용현황 보고
5.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

제7조제1항 중 "10명"을 "15명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기금업무 소관 국장"을 "위원 중에서 호선"으로 하며, "예산담당 부서장"은 "재정담당 부서장"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"인정하는 때에는"을 "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을 제7항부터 제10항으로 한다.

-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운영하고, 기금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다.

제9조제2항, 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항, 제3항,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,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-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·운용하며, 시 금고에 예치·관리한다.
-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제4조에 따라 투자·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,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, 제12조, 제13조를 제10조, 제11조, 제12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원 안	개 정 안
제2조(정의)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4. "수행기관"이란 시와 용자계약을 체결하고,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등 사회적금융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제4조(기금의 용도) (생략) 1.~ 5.(생략) <u><신 설></u> 6. (생략)	제4조(기금의 용도) (현행과 같음) 1.~ 5.(현행과 같음) 6.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비용자사업비 지원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) (생략) 1.~ 3.(생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4. (생략)	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) (현행과 같음) 1.~ 3.(현행과 같음) 4. 기금운용현황 보고 5.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. (현행 제4호와 같음)
제7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과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 ③ ~ ④ (생략)	제7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15명----- -----. ② ----- 위원 중에서 호선 ----- -----재정담당 부서장-----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~ ② (생략)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 ④ ~ ⑤ (생략) <u><신 설></u> ⑥ ~ ⑨ (생략)	제8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-----. ④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운영하고, 기금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다. ⑦~⑩ (현행과 같음)
제9조(기금의 관리) <u><신 설></u> ① (생략)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	제9조(기금의 관리)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·운용하며,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한다. ② (현행 제1호와 같음) <u><삭 제></u>

<p><u>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투자·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,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행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⑤ 제4조에 따라 투자·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,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</p>
<p><u>제10조(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)</u> (생략)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제11조(결산 및 보고)</u> (생략)</p>	<p><u>제10조(결산 및 보고)</u>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12조(존속기한)</u> (생략)</p>	<p><u>제11조(존속기한)</u>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13조(시행규칙)</u> (생략)</p>	<p><u>제12조(시행규칙)</u> (현행과 같음)</p>